

농업기계 () 검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종합검정 45일, 안전검정 30일, 국제규범검정 60일, 기술지도검정 30일, 변경검정 20일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)
	상호	
검정 용도의 제 품	기종명	
	형식명	
	형식 및 규격	
	제조번호	
검정번호		
검정의 생략사항		
검정 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		(년 월 일)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·검정대행기관 귀하

첨부서류	1. 종합검정, 안전검정 : 규격 및 성능 설명서,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, 사용설명서와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(농업용 트랙터, 콤바인) 각 1부 2. 국제규범검정 또는 기술지도검정 :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. 변경검정 :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	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검정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므로 빈칸으로 둡니다.
- 검정 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란은 검정 용도의 제품을 시험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, 포장 또는 현장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검정 용도의 제품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-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제출합니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